

# 知的所有權保護를 위한

## 國際機構 및 條約의 紙上探訪

- ……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國際機構 및 條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基……○
- ……礎的인 質問같지만 선뜻 體系의 對答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
- ……들 機構 및 條約과 接觸 機會가 적었기 때문이다. ……………○
- …… 그러나 知的所有權의 國際化時代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機構 및 條約을……○
- ……모르고는 知的所有權의 保護를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本誌는 紙上探訪을 마……○
- ……련, 이들 機構 및 條約을 紹介하기로 했다. ……………<金亨昊記>……○

◎ 第 8 回 ◎

### 이달의 目次

- 意匠의 國際寄託에 관한 헤이그協定
- 國際特許分類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크協定
- 商標登錄條約(TRT)
- 圖形標章의 國際分類設定에 관한 비엔나協定

<이번號로 끝>

### ■ 意匠의 國際寄託에 관한 헤이그協定

#### ▲ 正式名稱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 of November 6, 1925, revised at London(1934) and The Hague(1960), Supplemented by the Additional Act of Monaco (1961), the Complementary Act of Stockholm (1967) and the Protocol of Geneva(1975), and amended in 1979.

#### ▲ 加入國 現況

· 파리協約의 當事國은 어느 國家나 이 協定에 加入할 수 있으며, 加入國이 되기 위해서는 加入書나 비준서를 WIPO事務局長에게 寄託하여야 한다.

· 1987年 1月 現在 이 協定의 當事國은 벨지움, 베네티, 이집트, 프랑스, 東獨, 西獨, 홀리세, 헝가리, 인

도네시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모로코, 네덜란드, 세네갈, 스페인, 수리남, 스위스, 튀니지 및 베트남 등 20個國이다.

#### ▲ 主要內容

◎ 1960年(헤이그) 및 1967年(스톡홀름) 條例에 근거하여 적용할 수 있는 制度는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意匠의 國際寄託은 締約國인 當該國의 法律에 定한 바에 따라 直接 또는 本國 工業所有權廳의 仲介를 통하여 國際事務局(WIPO)에 할 수 있다.

—國際寄託은 當該 出願인이 指定한 各 締約國에 있어서 保護를 附與키 위하여 國內法에 의하여 要求된 모든 節次가 出願인에 의해 충족된 것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國際寄託은 當事國의 法律이 달리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效力이 締約國인 本國에 까지 미친다.

—國際事務局(WIPO)은 各 國際寄託을 위하여 定期刊行物에 當該 寄託 意匠의 寫眞이나 기타 그래픽 묘사를 흑백 또는 出願인의 要請에 따라 칼라로 公表한다.

—出願人은 그러한 公表를 國際寄託을 한 날로부터 12個月이 초과되지 않는 期間內에서 연기시켜 줄것을 要求할 수 있다.

—出願인에 의해 指定된 各 締約國은 當該 國際寄託의 公表의 수명일로부터 6個月以內에 保護를 拒絶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拒絶은 當該 保護를 拒絶하고자 하는 締約國의 官廳에 의해 國內法에 근거하여

定해진 節次 및 행정상의 규정과는 다른 國內法の 要件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保護期間은 最少한 5년이상으로 하며 當該 國內法律이 좀더 긴 保護期間을 規定하지 않는 경우에 5年期間의 마지막 年度에 更新하던 10年이 된다.

◎ 위에 明示한 制度는 1934年 條例의 적용만을 받는 다음의 締約國에 있어서는 아직 發効되지 않고 있다. 즉, 이집트, 東獨, 홀리세, 인도네시아, 리히텐스타인, 모로코, 스페인, 수리남, 튀니지 및 베트남등 10個國이 이들 국가들이다.

## ■ 國際特許分類에 관한

### 스트라스부르그協定

#### ▲ 正式名稱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of March 24, 1971. amended in 1979.

#### ▲ 加入國 現況

· 파리協約의 當事國은 어느 國家나 이 協定에 加入할 수 있으며, 加入國이 되기 위해서는 加入書나 비준서를 WIPO事務局長에게 寄託하여야 한다.

· 1987年 1月現在 이 協定의 當事國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지움, 브라질,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이집트, 필란드, 프랑스, 東獨, 西獨,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日本,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소련,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영국 및 美國 등 27個國이다.

#### ▲ 主要內容

- 國際特許分類(IPC)는 여덟개의 주요섹션으로 技術을 分類하고 있으며 細分類의 數는 約 59,000個에 달한다.
- 各 細分類는 아라비아숫자 및 라틴 알파벳으로 구성되는 고유記號를 갖게 된다.
- 그러한 고유記號가 每年 약 백만건에 달하는 各 特許文獻(公表된 特許出願 및 許與된特許)에 기재된다. 그러한 固有記號는 特許文獻을 發行하는 國內特許官廳에 의해 附屬된다.
- 分類는 “先行技術(prior art)”을 調査키 위한 特許文獻의 檢索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 現在 IPC를 적용하고 있는 國家는 約 70個國에 이르고 있다.

## ■ 商標登錄條約(TRT)

#### ▲ 正式名稱

Trademark Registration Treaty of June 12, 1973, amended in 1980.

#### ▲ 加入國 現況

· 파리協約의 當事國은 어느 國家나 이 條約에 加入할 수 있으며, 加入國이 되기 위해서는 加入書나 비준서를 WIPO事務局長에게 寄託하여야 한다.

· 1987年 1月 現在 이 條約의 當事國은 버키나췌소, 콩고, 가봉, 소련 및 토고등 5個國으로 이들 國家에 대해 TRT는 1980年 8月 7日 發効되었다.

#### ▲ 主要內容

- 商標登錄條約은 WIPO國際事務局에 대해 행하는 “國際出願(International application)”을 規定하고 있다. 國際出願에는 出願人에 관한 詳細한 情報, 當該 標章의 複製, 當該 標章을 使用하고 있거나 使用하려고 하는 商品 또는 서비스의 目錄, 當該 標章의 保護를 희망하는 締約國의 指定, 本 條約에 근거하여 國際事務局에 설치한 標章의 國際登錄所에 當該 標章을 登錄하고자 하는 要請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當該 國際出願이 本 條約 및 그의 規則에 明示한 方式要件을 充足시킬 경우에는 國際事務局에 의해 國際登錄이 된다. 國際登錄이 되면 國際事務局의 官報에 公表되며 또한 國際登錄權者가 保護받기를 희망한 各 締約國에 個別的으로 通知된다.
- 保護를 받고자 하는 國家는 國際出願時뿐만 아니라 出願後 어느 때라도 指定될 수 있다.
- 國際登錄은 公表한 날로부터 15個月 以內에 通告를 받은 指定國 國內官廳에 의해 所定의 保護拒否의 通知(notice of possible refusal)가 없는 경우 및 保護拒否의 通知가 있더라도 國內官廳의 最後決定에 의해 解消한 경우에는 各 指定國에서 國際登錄日에 國際登錄이 된 것과 同一한 效果를 가진다.
- 國際登錄의 存統期間은 現在 國際登錄日로부터 10年이다. 그리하여 各 指定國에서 國內의 効力을 權利者에 대해 更新 할 수가 있다. 更新에 의하여 存續期間은 前期間의 滿了日의 翌日로부터 10年間 繼續한다.

## ■ 圖形標章의 國際分類設定에 관한 비엔나協定

### ▲ 正式名稱

Vienna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done at Vienna on June 12, 1973.

### ▲ 加入國 現況

· 파리協約의 當事國은 어느 國家라도 이 協定에 加入할 수 있으며, 加入國이 되기 위해서는 加入書나 비준서를 WIPO 事務局長에게 寄託하여야 한다.

· 1987年 1月 現在 이 協定의 當事國은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및 튀니지로 이들 모두에 대해 1985年 8月 9日자로 本 協定이 發効되었다.

### ▲ 主要內容

비엔나協定은 圖形的要素에 의해 構成되고 있는 標章을 위한 分類制度를 國際的으로 統一하려는 目的下에 締結된 것으로서 協定이 適用되는 國家는 特別同盟을 形成함과 아울러 標章의 圖形的 要素를 위해 共通의 分類를 採用한다. (協定 1條)

그위에 이 標章의 圖形的要素의 分類는 그 要素가 分類되어 있는 29個의 大區分(categories), 300個의 中區分(divisions), 3,000個의 小區分(sections)의 一覽表에 의해 構成된다. (協定 2條(1) 參照)

特別同盟에 屬하는 國家들의 소관 官廳은 이 圖形的 要素의 分類를 自國에서 主要한 分類體系로서 또는 補助的인 分類體系로서도 使用할 수가 있다. (協定 4條(2))

이 경우 標章의 登錄, 更新에 관한 公文書, 公報類에 分類番號가 記載된다. (協定 4條(3)) <完>

## 本會新刊案內

###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부록: 누구나 발명인이 될 수 있다

— 발명의 발상기법 중심 —

가 격: 3,000원

판매처: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

## (案) 發明振興事業 (內)

特許廳과 本會는 發明振興事業을 積極推進하여 登錄된 權利가 企業化됨으로써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하고자 다음과 같은 事業을 展開하고 있 아오니 많은 參與바랍니다.

### ◎ 事業內容 ◎

- ◎ 發明獎勵館의 發明品 無料展示 및 企業化 旋幹
  - ◎ 優秀發明 試作品 製作 支援
  - ◎ 優秀發明者, 發明有功者, 優秀特許管理 企業 選定表彰
  - ◎ 海外 展示出品의 積極 支援
  - ◎ 海外 出願에 對한 補助金 支援
  - ◎ 優秀發明의 金融支援 推薦
    - 創業資金支援 推薦(45歲 未滿)
    - 企業化資金 投·融資 推薦
  - ◎ 發明의 保護 및 紛爭 仲裁
  - ◎ 發明特許品 流通販賣展示會 開催
  - ◎ 企業과 發明人 結緣(申請接受)
    -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 住所 및 電話番號
    - 公告, 登錄番號 및 日字
    - 發明考案의 명칭을 적어 보낼 것.
-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 ~8)로 문의 바랍니다.

## 韓國發明特許協會 캠페인

질서는 나라자랑 친절은 나의자랑  
이웃끼리 나눈온정 밝아오는 우리사회  
정직앞에 불신없고 공정앞에 불평없다  
에너지는 국력이다 아껴써서 애국하자